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69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강명구·성일종·박덕흠

이헌승 · 주호영 · 서명옥

김성원 · 김기웅 · 조배숙

임이자 · 임종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

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성적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 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 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제외한다. 이하 이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 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 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신체검 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 성 · 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 적,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

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